

2 호봉 재획정

가. 대상 :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

나. 호봉 재획정 요건(영 제9조)

1)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

- 가)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
- 나)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(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)의 변동이 있는 경우 포함

2)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

3)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



-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장학관이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 및 부교육감인 장학관이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
- ☞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장학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영 [별표 12]의 봉급표를 적용받으나,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영 [별표 11]의 봉급표를 적용받으므로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재획정 대상

다. 재획정 시기

1) 새로운 경력(자격, 학력, 직명 변동 등)을 합산하는 경우: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

2)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

- 가)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(징계)

 ⇒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

- 나) 영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(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)

 ⇒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

3)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

- ⇒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,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

[공통 사항]

-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· 강등 · 정직 · 직위해제 중인 경우 : 복직일
- 재획정 사유가 아닌 육아휴직 후 복직 등의 경우는 복직 시 별도로 재획정 하지 않음